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가단173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1. 9. 29.

판 결 선 고 2022. 1.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7. 1.경부터 2019. 1. 18.경까지 원고들이 추진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D'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에 일부 관여하였고, 2017. 9. 14.부터 2019. 1. 22.까지 원고들로부터 57,1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임금 등의 청구(2019가합26070)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성과급 지급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변호사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신축사업에 대해 불법으로 법률상담을 하는 대가로 원고들로부터 2017. 7. 1.부터 2019. 1. 19.까지 57,1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아